시간제 취업(D-2 자격 사증 소지자에 한함)

가. 기본워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 분야(E-1 ~ 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5000 k al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 1) 허용대상
- O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에 해당하는 사람
- 단기 유학(D-2-8)자격 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2) 허가제한

- 유학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 **불성실 유학 활동자 :** 출석율 및 평균학점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자
 -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허
 -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O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17. 4), 건설업('18.10)인 경우 ※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4급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및 E-9,E-10 분야는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근무 형태는 제한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제한)¹⁾
- 원거리 근무자(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30분,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

다.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

- 1) 심사일반 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제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2)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
- ① (허용대상)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
 -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 . 학사 1~2년 : 토픽 3급 이상 소지자
 - . 학사 3~4년 및 석·박사 : 토픽 4급 이상 소지자
 - (영어트랙과정 특례)
 -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¹⁾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

²⁾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의 영업장 예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② 처리요령

- O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③ 제조업, 건설업체 제한에 따른 서류심사 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i)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확인 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ii)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허용시간

- (학사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35시간 이내)
- 단,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대학	학년	きユヘ		허용	주중	
유형	i i	한국어 능력		주중	주말, 방학	인증대 혜택
	1~2학년	×		10/	10시간	
하시기저		3급	0	20시간	무제한	25시간
학사과정 3~4학\	04하니크	4⊐	×	10/	10시간	
	5~4약단	. 4급	0	20시간	무제한	25시간
석/박사	박사			15시간		15시간
과정 무	무관	4급	0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4)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O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5) 허가내용
- 자격약호 : D-2-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
- O 허가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 6)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7) 위반자 처리기준

- O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 단, 성적 및 출석율, 원격지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권 등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3)을 위반
 - 1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라. 신청서류

- O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⁴⁾
- 시간제취업 확인서5),
- 성적 증명서
- O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3) &}lt;u>허가조건</u>이란 허가기간 내의 근무시간, 근무장소(업종) 등 허가당시 조건을 말하며, 허가기간 도과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 해당

⁴⁾ 대학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허가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나, 개별적으로 전문인력 분야에 별도로 자격외활동을 신청 할 경우 규칙 72조에 따라 수수료(2만원)를 징구하게 됨

⁵⁾ 사업자등록증상 복합직종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이 있는 경우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의 업종란에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일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⁶⁾ 제조업 또는 건설업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불허하며,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간제취업확인서에 대학관계자가 세부 업종을 밝혀 기재하도록 안내

- 단,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⁷⁾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확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

마.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 예시

-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운영 예시〉

	소속대학 내	정부출연기관 등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학업과 연계	허가 면제	허가 대상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자격외활동)	(시간제취업)
학업과 무관	허가 대상	허가 대상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자격외활동)	(자격외활동)

⁷⁾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상의 고용주가 상이한 파견근로사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18.3.1)

○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 ①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i)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 *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심사
- ②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 i)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 *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필요
 - *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E-3) 체류 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 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 ※ 수익적 인턴활동에 대해서도 상기 기준 준용

※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O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이외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i)「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ii)「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iii)「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O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i)「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13. 삭제 <2011.12.31>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ii)「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 술시험원
 -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iii)「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붙임 4-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한글)

		\$	외국인유학	생 시	간제취	업	확인서	4	
	성	명					국 인 록번호		
대상자	학과(전공)					이수학기 (학번)		
	전화	번호				e-	-mail		
	업 처] 명							
	사 업 등록						업종		
취여	주	소							
취업 예정	고 용	수 주		(인 <u>대</u>	또는 서	명)	전화 번호		
근무처	취업기	기간					급여 (시급))	
	근무/	시간	평일 :				토.'	일요	2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사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소속	부산대학교		
유학생담당자 화이라	인 증 대학 여부	해당☑ 비해당□	성명	(인 또는 서명)
확인란	직위 (연락처)	담당자, 510-3353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Alien Name registration No. Appli -cant Department Term (Major) (PNU ID) Tel No. e-mail Company name **Business** Type of registration The industry No. expected Address place of Employer (Seal/Sig) Tel No. employment Period of Wage working (per hour) Working Weekday: Sat-Sun: hours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named student is enrolled at our university, and considering his/her academic and research progress hitherto, I believe that the part-time job indicated above will not impede his/her learning (research) in school.

20 . .

The head of Busan immigration office

Confirmation	Uni.	부산대학교		
	IEQAS	YES☑ NO□		
from a Uni. Official.	Job Position (Tel No.)	담당자, 510-3353	Name	(Seal/Sig)

붙임 4-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외국인유	우학생	시간제취임	업 오	요건 준수	辛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업 체 명							
취업 예정 근무처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고 용 주 성 명				전화 번호			

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건 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주 성명: (서명)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사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